대학원 융합전자공학과 내규 일부 개정(안)

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논문 제출, 지도 및 발표방법 ②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와 공과대학 계열내규에 따른다. 나.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청구를 위해 다음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단, 2006년~2012학년도 입학자로써 지도교수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소속인 경우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내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i) 전문학술지급 논문지에 200%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ii) "(i)"항의 논문 중 1편 이상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SCI/SCIE급)이어야 한다. ㉮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은 (i)항의 논문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컴퓨터분야 또는 지도교원의 소속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SCI/E급으로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을 SCI/E급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의 리스트를 적용한다.**	6. 논문 제출, 지도 및 발표방법 ②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와 공과대학 계열내규에 따른다. 나.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청구를 위해 다음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단, 2006년~2012학년도 입학자로써 지도교수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소속인 경우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내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i) 전문학술지급 논문지에 200%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ii) "(i)"항의 논문 중 1편 이상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SCI/SCIE급)이어야 한다. ㉮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은 (i)항의 논문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컴퓨터분야 또는 지도교원의 소속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SCI/E급 논문실적으로 인정한다.** **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의 학술대회 목록에 포함된 국제학술대회** **2) 한국정보과학회의 SW분야 우수학술대회 목록에서 A급 이상으로 분류된 국제학술대회**

Ⅱ. 전문

융합전자공학과 학과내규

제정일 : 2020.02.06.
개정일 : 2026.11.20.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또는 공과대학계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정에 소속된 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연구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공분야

융합전자공학과 내에 세부전공분야로 반도체 및 VLSI, 컴퓨터, 통신, 신호처리, 초고주파 및 광통신, 디스플레이, 생체계측, 생체모방시스템, 생체영상, 생체가상현실, 의생명과학의 전공분야를 둔다.

2. 입학

① 서류전형 심사에서는 학부과정 동일전공 여부 및 학부 및 대학원 성적표를 평가한다.
② 면접시험에서는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평가한다.

3. 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이수학점은 26학점(전공 11학점)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이수학점은 37학점(전공 17학점)으로 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이수학점은 58학점(전공 26학점)으로 한다.

4. 필수과목

① 필수과목은 필요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 석사논문연구(2학점)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
③ 박사학위과정: 박사논문연구1,2(각 2학점)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
④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박사논문연구1,2(각 2학점)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

5. 선수과목

타전공 입학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부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이수는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논문 제출, 지도 및 발표방법

① 학위청구논문발표(공청회)

관련 학회 학술대회급 이상에서 1편 이상 논문을 발표하거나 국내 학술지급 이상의 논문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대체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와 공과대학 계열내규에 따른다.

가.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국내학술대회급 이상에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국내 학술대회급 이상에는 국제표준화 기고문 발표도 포함한다.)

나.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청구를 위해 다음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단, 2006년~2012학년도 입학자로써 지도교수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소속인 경우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내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i) 전문학술지급 논문지에 200%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ii) "(i)"항의 논문 중 1편 이상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SCI/SCIE급)이어야 한다.
㉮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은 (i)항의 논문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컴퓨터분야 또는 지도교원의 소속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SCI/E급 논문실적으로 인정한다.**

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의 학술대회 목록에 포함된 국제학술대회

2) 한국정보과학회의 SW분야 우수학술대회 목록에서 A급 이상으로 분류된 국제학술대회

㉰ BK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나"항에서 요구하는 200%이상의 전문학술지급 논문지 실적에 국제 저명 학술지(SCI/SCIE급) 또는 Q2 저널의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거나, Q1 저널의 실적을 1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논문게재실적의 인정 및 제출

가. 박사과정의 논문실적은 공과대학 내규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국제저명학술지 중 Q1저널과 Q2저널에 공동 제1저자로 논문게재 시, 전체 공동 제1저자 수에 대한 백분율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논문게재 실적 제출 시, 1편에 한하여 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논문 제출일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한다.

다. 논문실적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만 인정한다.

라. BK 참여대학원생의 박사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7.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① 석사과정의 학생이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주저자로 1편 이상 게재 시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 대체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제출 학기에 논문 게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8. 논문지도위원회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심사위원장 1인을 선임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인 경우 3인, 박사과정인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9. 지도교수의 역할

① 지도교수는 각 학위과정 1기 때 선임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및 수강계획 지도, 학점관리, 논문제목 선정 및 논문 작성을 지도한다.

③ 외국인 유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공동지도교수제(외국인 전임교원을 공동 지도교수로 지정,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지원하는 학과 자체 제도)를 시행한다.

10. 석 박사학위 통합과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학생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의 석사 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내규를 따른다.

11. 학 석사학위 통합과정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의 학생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의 학사 석사학위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내규를 따른다.

12. 운영위원회

① 구성 : 운영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역할 : 운영위원회는 전자컴퓨터통신공학과의 내규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심의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내규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할 시,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부칙

부칙(2020. 2. 6. 제정)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2020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BK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규정은 BK 사업단 내부규정에 의거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7.항은 2019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3. 2.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6.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4. 8. 개정) 이 규정은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11. 2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제2항 나목 (ii) ㉰의 개정 규정은 입학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한다.